

『구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11월 1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20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11월 28일

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김 용 학

나. 제안이유

-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영업의 시설 및 장소의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업애로 청년·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 - 영업자가 시장에게 직접 영업장소를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함

-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우선순위 및 영업기간, 영업시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제5조)
- 음식판매자동차의 지역축제 등 참여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및 영업신고 표시에 관한 사항(안 제7조, 제8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, 「문화예술진흥법」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,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」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,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교통행정과, 기획예산담당관, 문화관광담당관, 회계과 및 문화예술회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종 우

○ 본 「구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」은

-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지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 사용계약 우선순위 부여, 각종 지역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의 참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